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법무02124- (전화: 6556)	시행성 특별위원	
보통기간	영구·종양구 10.5.3.1.	시	장
추진시 보통기간			
시행일자	89.9.		
보조 기관	부시장 전철 기획관리실장 유영 법무담당관 박성중	협조 기관	분 선 계 관 장
기안책임자			발 송 일
성 수 일 일	각 안 참조	발 신 일 의	
제 목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공무원교육상운영규정증개정규정 발령		
제 1 안 내부결재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훈령제 679 </div>	
1. 교육 01141-955(89.8.2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공무원교육상운영규정을 별첨(안)과 같이			
개정하고자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규칙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안과 같이 시보에 게재 발령하고자 합니다.			
첨부 발령안 1부. 끝.			
제 2 안			
수신 공보관			
제목 시보게재		5008	

1. 별첨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공무원교육상운영 규정증개정 규정을 시보에

게재 발령 할 것.

첨부 서울 별시 훈령 제 오1부. 끝.

제 3 안

수신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

제목 훈령발령

1.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공무원교육상운영 규정증개정 규정을 별첨과

같이 시보에 게재 발령하였으니 시행에 착오없도록 할 것.

첨부 서울특별시 훈령 제 오1부.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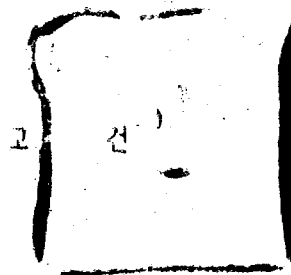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교육상운영

규정

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 89 년 9 월 1 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상운영규정중 개정 규정 (안)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상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 2 조 중 "성적이 가장 우수한자 1명에게" 를 " 고득점자 순위로 3인에게" 로 한다.

제 3 조 제3항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인원이 50명이하인 교육과정은 1위 15만원, 2위 10만원, 3위 5만원
2. 교육인원이 50명을 초과하는 교육과정은 1위 25만원, 2위 15만원, 3위 10만원
3. 간부양성과정등 3개월이상인 장기과정은 1위50만원, 2위30만원, 3위20만원

부 칙 주시상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원 행	개 정 (안)
<p>제2조 (생 략)</p> <p>교육상은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 (이하 "교육원" 이라하며 "서울특별시 소방학교"를 포함한다)</p> <p>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호의 교육과정을 이수한자중 <u>성적이 가장 우수한자 1명</u> 에게 수여한다.</p> <p>제3조 (생 략)</p> <p>① - ③ (생 략)</p> <p>1. 교육인원이 50명이하인 교육과정 은 <u>30만원</u></p> <p>2. 교육인원 50명을 초과하는 교육 과정은 <u>50만원</u></p> <p>3. 간부 양성과정등 3개월이상인 장기 과정은 <u>100만원</u></p>	<p>제2조 (현행과 같음)</p> <p>.</p> <p>.</p> <p>.</p> <p>.</p> <p>.</p> <p>.</p> <p>.</p> <p><u>교육점</u> 순위로 3인에게 수여한다.</p> <p>제3조 (현행과 같음)</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1. 교육인원이 50명이하인 교육과정은 <u>1위15만원, 2위10만원, 3위5만원</u></p> <p>2. 교육인원이 50명을 초과하는 교육 과정은 <u>1위25만원, 2위15만원,</u> <u>3위10만원</u></p> <p>3. 간부양성과정등 3개월이상인 장기 과정은 <u>1위50만원, 2위30만원,</u> <u>3위20만원</u></p>

무시장